

##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 현황 및 시사점

김 한 성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hskim@kiep.go.kr, Tel: 3460-1087)

- |                |                        |
|----------------|------------------------|
| 1. 서론          | 3. 한국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분석 |
| 2. FTA의 효율적 활용 | 4. 결론 및 시사점            |

### 주요 내용

- ▶ 지금까지 한국의 FTA 추진 시 정부·언론·학계의 관심은 주로 어떤 품목이 얼마나 빨리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지에 집중됨.
  - 물론 개방의 폭과 깊이가 FTA 체결 당사국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체결된 FTA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활용되는지도 FTA 내용 못지않게 중요함.
- ▶ 한국이 현재 전 세계 주요 교역국과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미 발효된 FTA들을 살펴보고 협정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FTA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발효되어 작동하고 있는 4개 FTA에서 상품협정에서의 특혜관세 활용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통해 살펴 보고 있음.
  -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무역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입 재화의 전체 수입액 중, 실제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의 비중을 의미하는 특혜관세 활용률은 양자 혹은 다자간에 체결된 FTA를 통한 관세인하 혹은 철폐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됨.
-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그리고 한·ASEAN FTA를 대상으로 한 특혜관세 활용률 분석에서 각각의 FTA는 특혜관세 활용률에서 큰 편차를 보임.
  - 수입 측면에서 한·칠레 FTA의 경우 한·칠레 FTA 발효 이후 4년 평균 90.5%라는 매우 높은 특혜관세 활용률을 기록한 반면, 한·ASEAN FTA는 발효 1년간 27.0%의 상대적으로 저조한 활용률을 보임.
  - 또한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의 경우 한국의 수입에서 특혜관세 활용률은 발효 후 약 2년간 각각 평균 29.8%와 43.2%로 나타남.
- ▶ 특히 한·ASEAN FTA를 이용한 한국 수출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ASEAN 국가들의 역량과 특수성을 고려한 준비와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여겨 짐.
- ▶ FTA의 효율적인 활용은 체결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님.
  - 따라서 동시다발적 FTA의 추진은 기체결된 FTA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진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 FTA 협정 발효 후, FTA 이행과 관련된 국내 외적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관리 기구를 정부 내에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 FTA 상대국을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효율적 이행'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상대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함.

# 1. 서론

■ 지금까지 한국의 FTA 추진 시 정부·언론·학계의 관심은 주로 어떤 품목이 얼마나 빨리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지에 집중됨.

- 물론 개방의 폭과 깊이가 FTA 체결 당사국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체결된 FTA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활용되는지도 FTA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 됨.

■ 칠레와 시작된 한국의 FTA는 싱가포르, EFTA, ASEAN 그리고 미국과의 FTA까지 총 5개 FTA가 발효하였거나 협상을 완료함.

- 또한 현재 EU, 인도, 캐나다, 멕시코, GCC 등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교역국/지역과 동시다발적이고 포괄적인 FTA를 추진한다는 전략을 수행하고 있음.

■ 새로운 FTA를 추진함에 앞서 이미 발효된 FTA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고는 현재 발효된 4개 FTA를 중심으로 상품교역에서 각각의 FTA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둠.<sup>1)</sup>

○ FTA가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그리고 통상규범과 경제협력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FTA를 통한 상품교역에 초점을 맞춰 살펴봄.

- 한·칠레 FTA가 발효한 2004년에 0.55%에 불과하던 FTA 교역비중은 2006년 한·싱가포르 및 한·EFTA FTA가 발효되면서 3.89%로 늘어났으며 2007년 한·ASEAN FTA가 추가되면서 11.51%로 늘어남.<sup>2)</sup>

- 교역액도 크게 늘어,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은 2004년 7억 8백만 달러에서 2007년 429억 8천 7백만 달러로 6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19억 3천 4백만 달러에서 408억 4천 7백만 달러로 약 21배 증가함.

표 1. 한국의 FTA 교역비중: 2004~2007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 구분  | 2004             | 2005             | 2006              | 2007               |
|-------|-----|------------------|------------------|-------------------|--------------------|
|       |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 세계    | 총수출 | 253,845          | 284,419          | 325,465           | 371,489            |
|       | 총수입 | 224,463          | 261,238          | 309,383           | 356,846            |
|       | 총교역 | 478,307          | 545,657          | 634,847           | 728,335            |
| 칠레    | 수출  | 708<br>(0.28%)   | 1,151<br>(0.40%) | 1,566<br>(0.48%)  | 3,115<br>(0.84%)   |
|       | 수입  | 1,934<br>(0.86%) | 2,279<br>(0.87%) | 3,813<br>(1.23%)  | 4,184<br>(1.17%)   |
|       | 교역  | 2,642<br>(0.55%) | 3,430<br>(0.63%) | 5,379<br>(0.85%)  | 7,299<br>(1.00%)   |
| 싱가포르  | 수출  | -                | -                | 9,489<br>(2.92%)  | 11,949<br>(3.22%)  |
|       | 수입  | -                | -                | 5,887<br>(1.90%)  | 6,860<br>(1.92%)   |
|       | 교역  | -                | -                | 15,376<br>(2.42%) | 18,809<br>(2.58%)  |
| EFTA  | 수출  | -                | -                | 1,730<br>(0.53%)  | 1,123<br>(0.30%)   |
|       | 수입  | -                | -                | 2,195<br>(0.71%)  | 3,554<br>(1.00%)   |
|       | 교역  | -                | -                | 3,926<br>(0.62%)  | 4,676<br>(0.64%)   |
| ASEAN | 수출  | -                | -                | -                 | 26,799<br>(7.21%)  |
|       | 수입  | -                | -                | -                 | 26,250<br>(7.36%)  |
|       | 교역  | -                | -                | -                 | 53,049<br>(7.28%)  |
| 총계    | 수출  | 708<br>(0.28%)   | 1,151<br>(0.40%) | 12,786<br>(3.93%) | 42,987<br>(11.57%) |
|       | 수입  | 1,934<br>(0.86%) | 2,279<br>(0.87%) | 11,895<br>(3.84%) | 40,847<br>(11.45%) |
|       | 교역  | 2,642<br>(0.55%) | 3,430<br>(0.63%) | 24,681<br>(3.89%) | 83,834<br>(11.51%) |

주: ( ) 안의 숫자는 총수출입 및 교역에서의 비중.  
자료: 무역협회 교역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 2. FTA의 효율적 활용

### 가. 한국의 FTA 체결국과의 교역현황

■ 한국의 총 교역에서 FTA가 발효된 국가와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초의 FTA가 발효된 2004년의 0.55%에서 2007년에는 11.51%로 급증함(표 1 참조).

■ 비록 한국의 FTA 교역비중이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임.

1) 본 연구에 포함된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2008년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된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추진 전략연구」 내용 중 일부를 발제함.

2) 한·ASEAN FTA는 한국과 ASEAN 국가 중 국내비준 절차가 끝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와 2007년 6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이후 2008년 1월에는 필리핀과, 그리고 2008년 하반기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와 추가적으로 발효됨. <표 1>에서는 ASEAN 10개국을 통계를 포함하고 있음.

- 2005년 교역액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FTA 교역비중은 35.3%에 달하며, FTA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싱가포르나 멕시코, 칠레의 경우 각각 총 교역액의 60.1%, 85.3%, 66.8%가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차지하고 있음.<sup>3)</sup>

■ 그러나 한국이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한국의 FTA 교역비중은 8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sup>4)</sup>

- 현재 발효된 4개 FTA는 총 14개국을 대상으로 체결되었으며 한·미 FTA와 한·EU, 한·캐나다 등 현재 진행 중인 FTA가 완료되어 발효될 경우 한국의 FTA 체결 국가는 총 45개국으로 늘어나 FTA 교역비중도 약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향후에 중국, 일본을 포함, GCC, MERCOSUR,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FTA가 확대되면 전체 무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나. 효율적인 FTA 이행의 중요성**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TA 체결국간의 교역이 한국의 교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여겨짐.

- 특히 최근 DDA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양자간 혹은 지역 무역협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FTA가 체결되면 체결국간에 거래되는 모든 상품교역은 무조건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음.

- 양국간 합의를 통해 나온 상품 양허안에서 관세가 인하 혹은 철폐된 경우, 상대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 혹은 한국에서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당연히 FTA 협정문에 명시된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움.

■ 그러나 현실적으로 FTA를 체결하더라도 체결국간에 교역되는 품목들이 협정에 명시된 특혜관세혜택을 모두 누리지는 못함.

- 비록 자유무역협정에서 특정 상품이 특혜관세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원산지 증명에 드는 비용, 혹은 정보 부재로 인해 특혜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3) 「FTA 원산지증명제도 개편 설명회」 발표자료.

4) 「FTA 이행 및 활용 방안 간담회」 발표자료.

- 특히 각 FTA마다 상세하게 규정된 원산지규정은 FTA 체결국이 교환한 상품양허에 따라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특혜관세혜택을 거부당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FTA를 체결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정부간에 맺어진 FTA를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도 체결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임.

- FTA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특히 한국이 체결하고 발효한 FTA가 네 건이 넘어선 상황에서 상품교역의 특혜관세 이행과 관련된 한국의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체결될 FTA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함.

-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한국이 체결한 네 건의 FTA에서 각각의 FTA가 상품교역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특혜관세 활용률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3. 한국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분석**

**가. FTA 활용률**

■ 양자 혹은 다자간에 체결된 FTA가 상품교역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기준으로 FTA 특혜관세 활용률(utilization rate)을 이용할 수 있음.

- 특혜관세 활용률이란 일정 기간 동안 FTA에 따라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입 재화의 전체 수입액 중 실제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의 비중을 의미하며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됨.<sup>5)</sup>

$$\text{활용률} = \frac{\sum_{\substack{p \in \text{상대국} \\ s \in \text{품목}}} \text{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 M_{p,s}}{\sum_{\substack{p \in \text{상대국} \\ s \in \text{품목}}} \text{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 M_{p,s}} \times 100\%$$

여기서  $M$ 은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의미.

5) 예를 들어, 특정기간 동안 칠레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총 수입액 중 한·칠레 FTA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품목의 수입액이 10억 달러이고, 그 중에 실제로 한·칠레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은 품목의 수입액이 6억 달러인 경우, 한·칠레 FTA 활용률은 60%임((6억 달러/10억 달러)×100%).

○ 예를 들어 ‘한·칠레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입’이란, 한국이 특정 기간 동안 칠레에서 수입하는 총 수입에서 한·칠레 FTA에서 양허제의 되었거나, 현재까지 관세인하가 시작되지 않아 일반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혹은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어 특혜관세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품목 등, 특혜관세와 일반관세의 차이가 없는 품목을 제외한 품목의 수입액을 의미함.

- 즉, 활용률은 특정 무역협정 혹은 FTA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특혜관세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 활용률이 0%인 경우 해당 FTA를 통해 보장된 특혜관세가 전혀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인 경우 해당 FTA의 특혜관세혜택이 완벽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나타냄.

■ 본 절에서는 한국의 4개 FTA에서 특혜관세 활용률을 측정함.

- 먼저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및 한·ASEAN FTA 등 총 4개 FTA를 대상으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수입품목에 대하여 FTA별 특혜관세 활용률을 측정함.

- 또한 한·칠레 FTA와 한·ASEAN FTA를 대상으로 한국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살펴봄.

- 각각의 FTA에 대한 특혜관세 활용률 분석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왜곡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발효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나누어 분석함.<sup>6)</sup>

**나. FTA별 특혜관세 활용률 비교: 수입 활용률**

■ 한국이 이미 발효한 4개 FTA에서 체결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한국 수입에 대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표 2>에 나타나 있음.

표 2. 한국 수입에 대한 FTA 특혜관세 활용률

| 기간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ASEAN |
|-----|-------|--------|--------|---------|
| 1년차 | 77.7% | 28.2%  | 43.2%  | 27.0%   |
| 2년차 | 93.8% | 31.4%  | 41.9%  | -       |
| 3년차 | 93.6% | -      | -      | -       |
| 4년차 | 93.3% | -      | -      | -       |
| 누적  | 90.5% | 29.8%  | 42.5%  | 27.0%   |

주: 한·ASEAN FTA는 2008년 5월을 기준으로 한국과 FTA가 발효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및 활용 방안’(2008)에서 정리.

6) 한·칠레 FTA는 2004년 4월~2008년 3월의 4년을,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는 각각 2006년 3월~2008년 2월과 2006년 9월~2008년 8월의 2년을, 그리고 한·ASEAN FTA는 2007년 6월~2008년 5월의 1년을 대상으로 함.

- 활용률 측정은 한국관세무역개발연구원이 제공한 한국 수출입 자료를 기초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과 각 FTA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한 총 수입액을 계산하여 작성함.

■ 먼저 한국이 최초로 발효한 한·칠레 FTA의 경우 4년 평균 90.5%라는 매우 높은 특혜관세 활용률을 기록함.

- 발효 1년차에 77.7%의 활용률을 기록했을 뿐, 이후 3년간 90% 이상의 높은 활용률을 보임.

- 한·칠레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일반적으로 발효 1년차에서 2년차로 넘어가면서 급격한 증가를 기록하고, 이후 향상된 활용률이 유지되는 일반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음.

■ 반면에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의 경우 활용률은 각각 평균 29.8%와 42.5%로 나타남.

- 싱가포르에서 수입되는 수입품의 경우 발효 1년차에 28.2%, 그리고 2년차에 31.4%의 FTA 활용률을 기록함.

- EFTA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활용률은 발효 1년차에 43.2%에서 2년차에 41.9%로 다소 낮아짐.

■ 싱가포르의 경우, 29.8%라는 높지 않은 활용률은 중계무역국인 싱가포르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싱가포르 제품의 FTA 활용률이 낮은 것은 한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에 주변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싱가포르의 산업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입품목이 많다는 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짐.

- 특히 싱가포르 수입에서 수입액 기준으로 약 13%를 차지하는 일반기계류와 12% 가량의 수입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 기계류의 활용률이 각각 6.7%와 17.6%로 낮은 비율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저조한 활용률을 기록하게 된 주요 요인이 됨.

■ 한국이 EFTA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입품에 대한 한·EFTA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발효 1년차에 43.2%라는 비교적 양호한 활용률을 기록하였으나, 2년차에도 여전히 유사한 수준의 활용률을 기록함.

- 이는 EFTA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인 일반기계류의

한·EFTA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23.7%로 저조한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큼.

■ 마지막으로 한·ASEAN FTA는 발효 첫 해인 2007년 6월~2008년 5월 1년간 27.0%의 활용률을 기록함.

- 이는 FTA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입품의 27%만이 실제로 특혜관세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발효 첫 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한·ASEAN FTA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특혜관세 활용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품목별 들어가서 살펴보면, 연구 기간 동안에 한국의 對ASEAN 최대 수입 품목은 가공광물(특히 천연가스)로, 전체 수입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동 품목에 대한 한·ASEAN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약 10.7%로 매우 낮고,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한·ASEAN FTA 특혜관세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는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단기적으로 한국의 수입업자나 상대국 수출업자의 협력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한·ASEAN FTA의 수입 활용률이 낮은 데에는 특정 품목의 특이한 상황에 기인하는 바가 큼.

- 가공광물을 제외하고 ASEAN 수입에 대한 한·ASEAN FTA 활용률을 계산한 결과 5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발효 1년차 활용률로 나쁘지 않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여겨짐.

**다. FTA별 활용률 비교: 수출 활용률**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입수가 가능한 칠레와 ASEAN 국가에 대한 활용률을 측정함.

- 한국이 FTA 체결한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활용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입 관세당국의 자료 협조가 필요함.

○ 싱가포르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한국 수출품에 대한 활용률 조사는 무의미하며, EFTA 국가들과는 자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음.

○ 한·ASEAN FTA를 활용한 한국의 대ASEAN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한국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에 신청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을 근거로 추정치를 측정함.

■ 한국의 FTA를 이용한 수출 활용률은 <표 3>에 정리됨.

- 한·칠레 FTA의 활용률은 발효 1년차부터 9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4년 누적 활용률은 무려 96.9%에 달함.

■ 반면에 한·ASEAN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비록 추정치이지만 하지만 약 14.4% 정도로 낮은 수준을 기록함<sup>7)</sup>

- 이는 한·ASEAN FTA가 발효 1년차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저조한 특혜관세 활용률로, 한국이 ASEAN에 수출함에 있어 한·ASEAN FTA에서 명시된 특혜관세혜택을 누리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줌.

○ 한국 수출의 한·ASEAN FTA를 이용한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은 이유로는 발효 1년차로 관세인하 폭이 낮다는 점과 다른 FTA에 비해 홍보가 부족한 점, 그리고 ASEAN에서 한국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의 인식과 FTA 활용 의지가 낮다는 점이 이유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세인하의 폭이 넓어지면서 한국 수출의 특혜관세 활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 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표 3. 한국 수출에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              | 활용률   |       |       |       |       |
|--------------|-------|-------|-------|-------|-------|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누적    |
| 한·칠레 FTA     | 93.1% | 95.8% | 96.7% | 98.7% | 96.9% |
| 한·ASEAN FTA* | 14.1% | -     | -     | -a    | 14.4% |

주: 한·ASEAN FTA 활용률은 한국의 수출 실용률을 바탕으로 일반품목군의 관세인하 90%와 한국 수출의 약 30%가량만이 실질적으로 관세를 납부한다는 가정하에 추산된 수치임.

자료: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및 활용 방안 (2008)」에서 정리.

**4. 결론 및 시사점**

■ 위에서 살펴본 4개의 FTA는 특혜과세를 활용하는 활용률에서 큰 차이를 보임.

- 한·칠레 FTA의 경우 수출과 수입에 있어 모두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높은 특혜관세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한·ASEAN FTA는 발효 첫 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7) 한·ASEAN FTA의 1년차 실용률은 약 3.9%로 나타남. 실용률 측정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추진 전략」(2008)의 제5장 참조.

도 상대적으로 낮은 활용률을 기록함.

- 특히 한국의 대ASEAN 수출에서의 한·ASEAN FTA를 이용한 특혜관세 활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양자간 FTA에서 100% 활용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어느 정도의 활용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체결한 FTA에서 활용률은 60~70%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짐.<sup>8)</sup>

- 한국의 경우, 칠레와의 수출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FTA 활용률을 기록한 반면, 나머지 FTA 활용률은 50%를 넘지 못함.

■ 특히 한·ASEAN FTA의 낮은 특혜관세 활용률은 FTA 이행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향후 FTA 추진에 시사하는 바가 큼.

- ASEAN은 기존에 한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는 다른 특징을 지님.

- 즉, ASEAN 이전에 한국이 FTA를 체결한 상대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거나, 칠레와 같이 개발도상국이더라도 많은 FTA 경험을 지니고 있는 국가임.

- 반면에 대다수 ASEAN 국가들은 FTA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고 체결된 FTA를 민간부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만한 국가적 역량을 지니지 못함.

- ASEAN 국가들의 경험 및 역량 부족은 한국이 ASEAN 시장에서 한·ASEAN FTA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수출을 늘리고 한국 상품의 ASEAN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됨.

■ FTA를 체결한 ASEAN 국가들의 역량과 특징을 고려한 적절한 준비와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은 한·ASEAN FTA가 한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에 비해 낮은 특혜관세 활용률을 기록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여겨짐.

- 2008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국내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FTA 체결국과의 교역에서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미 무관세이거나 큰 실익이 없어서(39%), FTA 체결상황이나

활용방법을 잘 몰라서(37%), 원산지증명에 대한 상대국 바  
이어 요청이 없어서(16%), FTA 활용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  
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11%) 등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됨.<sup>9)</sup>

- 설문 결과는 국내 업자들조차도 한·ASEAN FTA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보여줌.

■ 따라서 향후 FTA의 추진은 기체결된 FTA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진행되어야 함.

- FTA 체결 상대국과의 교역에서 활용률을 검토하고 FTA를 이행하고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찾아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ASEAN과 같이 FTA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국가 인프라가 약하며 통관 과정이 불투명하고 부패가 잦은 저개발국, 혹은 개발도상국과의 FTA는 이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준비가 필요함.

- FTA 이행에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찾아내 제거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한 학습 효과가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FTA 협정이 발효된 후, FTA 이행과 관련된 국내 외적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관리기구를 정부 내에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각 협정은 FTA 이행을 관리하는 '이행위원회'를 두고 있음.

- 그러나 이행위원회는 체결국간 국가 대 국가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협정 이행에 따른 국내 문제까지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이행위원회의 역할을 국내의 문제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하거나 각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FTA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도록 함.

■ 또한 향후 FTA 협상에서 이행을 위한 체결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정문 내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체결 상대국 세관에 협정 발효 후 일정 기간 동안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관세청 직원의 파견이나 이행위원회의 권한 강화, 혹은 중간 점검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협정문 내에

8) 예를 들어 Cadot *et al.*(2002)에 따르면 NAFTA의 경우 활용률은 약 64% 정도인 것으로 조사됨.

9) 『기업의 FTA 활용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2008.8),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명문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상품부문의 특혜관세 활용률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등 FTA에서 포함하고 있는 다른 부분에서의 이행과정도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FTA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함. **KIEP**